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상기 내용은 청약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며, 청약신청 전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거나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 청약일정 및 당첨자 발표

신청일자	신청방법	당첨자 및 등·호수 발표	당첨자 및 등·호수 발표 결과 확인 방법
2022. 07. 18(월)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인터넷 청약 (www.applyhome.co.kr) (09:00 ~ 17:30)	당첨자 및 등호수 발표일 2022. 07. 28(목)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청약-home 앱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가능)

※ 특별공급 신청은 인터넷 청약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 반드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 인증서를 발급받아 해당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인터넷청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 세대수

구분		59A	75A	75B	84A	84B	계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부산광역시	-	1	1	1	2	5
	국가유공자	-	2	1	2	1	6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1	1	1	-	3
	중소기업 근로자	-	1	1	-	1	3
합계		-	5	4	4	4	17

### ■ 신청대상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자 (단, 거주기간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소형 자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li> <li>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기관                      장애인 :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 등 : 국가보훈처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근로자 : 부산지방 중소기업창업지원과                      ※ 국가유공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2호(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2호의 2(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3호(보훈대상 대상자 또는 그 유족), 제4호(5·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5호(특수임무 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6호(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li>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기]</li> <li>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ul>